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2. 1.(월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도로시설안전과	담당 자	• 과장 강성습, 사무관 박선훈, 주무관 김종현 • ☎ (044)201-3927, 3926, 3931
보 도 일 시		2021년 2월 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화물차·건설기계 과태료 20% 감면 혜택 3차 시행

- 생계형 운전자 대상 코로나-19 극복 위한 사전납부 3개월 연장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코로나-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,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.

○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하여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%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.

-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(당초 20일 + 연장 90일)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%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.

□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-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*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.



* 최근 1년 동안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없는 20,278명 대상 20% 감면(약 92억 원 규모)

○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*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-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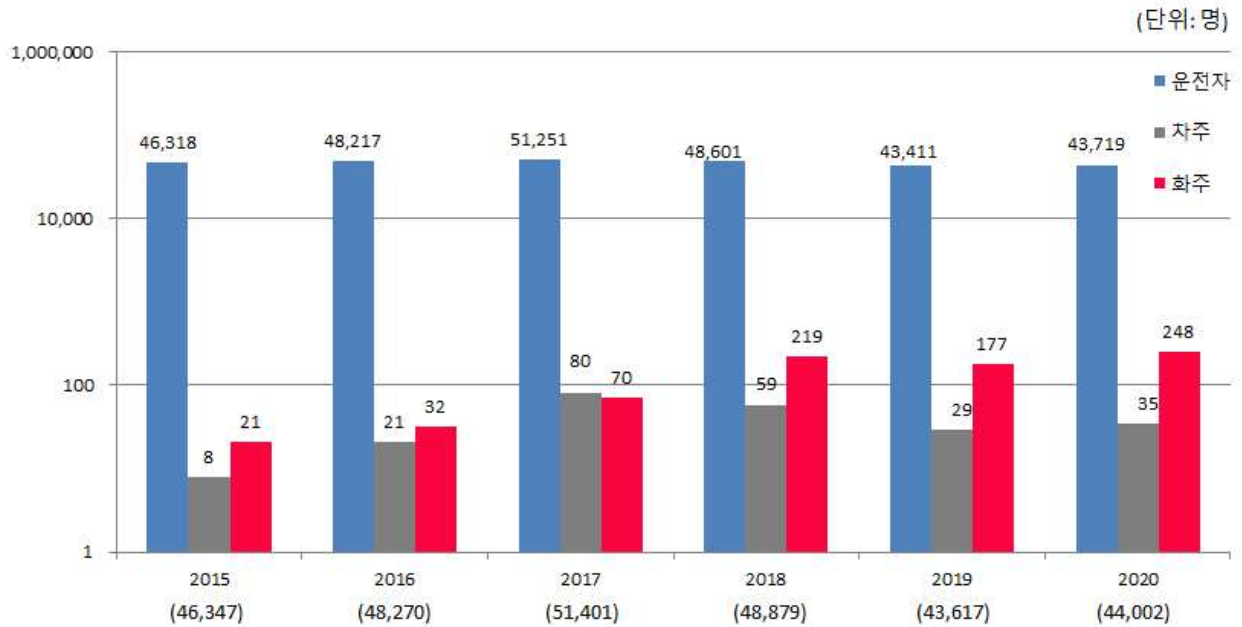
* 1회 운행제한 위반자 (5월) 4,154명 (11월) 2,226명(△1,928명, 46.4% ↓)

-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.

-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, 코로나-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 시설안전과(운영제한) 박선훈 사무관(☎ 044-201-3926), 김중현 주무관(☎ 044-201-39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

최근 6년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



과태료 징수유예에 따른 과적위반 감소 현황

